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8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1월 일  
제출자 : 강서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·시행(2019. 7. 9.)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,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. 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10조)

나.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,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. (안 제13조)

다. 토지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절차를 규정함. (안 제15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의2, 제17조의2, 제38조의2, 제65조, 제6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9.9.25. ~ 10.15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 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,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, 제4조를 제6조로 하고, 제3조를 제4조로 한다.

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3조, 제5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)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의 청문절차를 거친다.

제5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)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의 청문절차를 거친다.

제10조(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)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의 청문절차를 거친다.

제14조(종전의 제10조) 본문 중 “제3조제2항”을 “제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)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

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5조(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)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(이하 “토지 등 소유자”라 한다)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(指章)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3조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4조 · 제5조 (생 략)</p> <p>제6조 · 제7조 (생 략)</p> <p>제8조 · 제9조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0조(시설물의 이용료) 구청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</p>	<p>제3조(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) 구 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 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의 청문절 차를 거친다.</p> <p>제4조 (현행 제3조와 같음)</p> <p>제5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 차)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의 청문절차를 거친다.</p> <p>제6조 · 제7조 (현행 제4조 및 제5 조와 같음)</p> <p>제8조 · 제9조 (현행 제6조 및 제7 조와 같음)</p> <p>제11조 · 제12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</p> <p>제10조(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)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 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 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의 청문절 차를 거친다.</p> <p>제14조(시설물의 이용료) ----- -- 제4조제2항-----</p>



<신 설>

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5조(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)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(이하 “토지등 소유자”라 한다)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(指章)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: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과장 강점경

(담당: 행정7급 엄정현 / ☎ 2600-6277)

#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## 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## □ 개정사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,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횡수를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10조)
-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횡수, 갱신기간, 조건 (안 제13조)
-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 취소동의의 철회 절차 (안 제15조)

## 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“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취소”를 규정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, “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횡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.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가번호	2019 - 39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급	행정7급	성명	김태환
입안주무부서	지역경제과	통보(조치)일		2019. 10. 15.	
관련조문		검토결과		조치사항	
개정안 전부		원안 동의		-	

##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19A서울강서048		
정책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
	부서명	지역경제과	
	담당자명	엄정현	전화번호 02-2600-6277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19년 9월 18일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지역경제과)	<p>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,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 기간과 횟수를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.</p>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 입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<p>‘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’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</p>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>2019년 10월 14일</p> <p><b>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</b></p> <p>(담당자/연락번호 : 최은영/02-2600-6762)</p> <p>지역경제과장 귀하</p>			

#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10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
2.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

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·수익허가를

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3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)** ① 토

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65조(상인회)**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>

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, 2018. 6. 12.>

1.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
  2.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
  3.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
  4.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
  5.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(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6.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  7.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
-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>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
  2.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

3.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
4.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,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- 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>
-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9. 1. 8.>
-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1. 8.>
-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68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상인 및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3.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

4.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